

심 사 보 고 서

(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)

안 건 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	1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2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5.12. 이민석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0.5.13.

다. 상정일자: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5.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민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 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,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1회용품)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,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
 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 - 안 제4조는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,
 - 안 제5조는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
 - 안 제6조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
 - 안 제7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.
 - 안 제8조는 공로가 있는 업체를 표창할 수 있는 규정
 -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쓰레기 소각 및 매립할 수 있는 공간축소와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문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신종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후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25% 이상 늘어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. 구에서는 1회용품이 사용 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세척 후 분리수거 등 교육 및 홍보,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참고사항

○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: 5개 구 제정

- 2019년 제정(광진구, 양천구)
- 2020년 제정(강동구, 금천구, 도봉구)

○ 1회용품의 종류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 1]

1회용품(제5조 관련)

1. 1회용 컵·접시·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2. 1회용 나무젓가락
3.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
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5.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 ·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6. 1회용 면도기 · 칫솔
7. 1회용 치약 · 샴푸 · 린스
8. 1회용 봉투 · 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9.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)
10.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